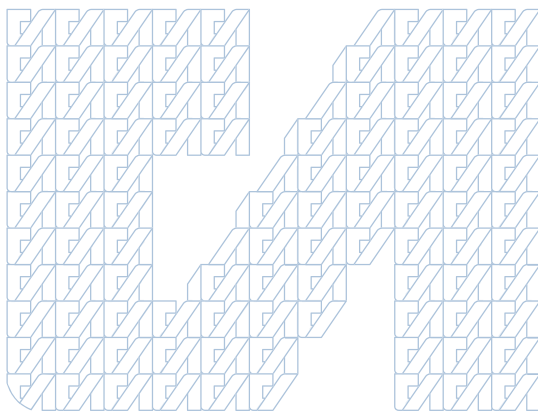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통합관리 운영방안 검토

이정범



정책연구 2019-32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통합관리 운영방안 검토

이 정 범

연구책임

• 이정범 / 도시기반연구실 책임연구위원

연구지원

• 유희주 / 도시기반연구실 위촉연구원

정책연구 2019-32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통합관리 운영방안 검토

발행인 박재목

발행일 2019년 10월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선화동)

전화: 042-530-3500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si.re.kr>

인쇄: 중부인쇄기획 TEL 042-253-7537 FAX 042-253-7538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요약 및 정책건의

□ 대전시 장애인 관련 업무의 통합관리가 필요함

- 대전시의 경우 기존 또는 사유 건축물 또는 도로 시설에 대한 도면검토, 현장점검,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현재 없으며, 장애인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
 - 현재 민원은 통합적으로 시민봉사과에서 담당하여 관리하고 있음
 - 구두로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는 따로 데이터가 저장되어 관리되고 있지 않으나 국민 신문고를 통해 들어온 민원의 경우는 데이터로 관리되고 있음. 하지만 세부적으로 카테고리화가 되어있지 않아 장애인 고충에 관한 민원을 따로 알기는 어려운 실정임

□ 대전시 장애인 관련 필요업무

-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 업무는 일반적으로 이동편의시설의 설계에 대한 도면검토부터 기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 민원접수 및 현장점검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그 밖에 홍보, 교육 등의 업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대전시에도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시설물 개선을 하고 있으나 많이 미흡한 실정임
 - 또한, 이미 개선된 시설물의 경우도 장애인 보행환경에 맞도록 설치되지 않은 지점이 많아 전반적인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조직구성

- 장애인 관련 시설의 경우 통합 관리하는 전담부서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총괄 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필요함
 - 현재 대전시에서는 장애인 관련 업무가 분산되어 있으며, 세부 기준에 대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없음
 - 경기도의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별도로 채용하여 이를 전담 할 수 있는 조직 구성이 필요함
- 따라서, 수원시의 사례를 바탕으로 필요인력 구성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수원시는 (사)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와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중이며, 경기도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와 별개로 운영됨
 - 수원시와 대전시를 단순 비교하면 대전시 면적은 수원시의 약 4.5배이며 인구는 약 1.2배, 도로연장은 2.3배임
 -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조직구성을 보면 센터장, 사무국장, 기술요원(토목기사1명, 교통기사1명), 행정요원1명으로 총6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전시에서 센터를 운영할 경우 최소 6명의 인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경기도와 수원시의 조직 업무를 기본으로 하여 대전시의 센터에서의 업무는 도면검토, 현장점검,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이 될 것이며, 추후 업무의 양에 따라 추가 인원 배치를 검토할 수 있음

□ 운영방안

- 장애인 관리업무는 시에서는 총괄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됨
- 운영의 경우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과 위탁운영 하는 방안이 있음
- 장애인콜택시와 더불어 장애인 관련 업무를 ①시설관리공단을 통하여 같이 하는 방안, ②시 산하기관에 위탁운영하거나 ③입찰을 통해 장애인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 등이 있음

1) 직접운영

- 시에서 전담인원을 두고 장애인 관련 업무를 통합관리 하는 방법이며, 이를 위해서는 꾸준히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전문직 공무원이 필요함
 - 장애인 관련 업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공무원의 잦은 보직이동으로 인하여 전문성을 갖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서는 전문직 공무원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등 수반되는 부담 등에 대한 재원 마련이 필요함(서울시의 경우 공무원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2) 위탁운영

① 시설관리공단을 통한 위탁운영 방안

- 많은 시도에서는 장애인콜택시 업무를 시설관리 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이동지원센터를 같이 설치하여 함께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대전시의 경우 시설관리공단이 아닌 복지재단에서 장애인

콜택시 업무를 수행 중에 있어 현 시점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짐

② 산하기관 위탁운영 방안

- 복지재단, 대전세종연구원, 도시공사 등과 같은 센터를 운영할 역량을 갖춘 비영리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이 있음
- 대전시의 경우 장애인콜택시 업무를 복지재단으로 이관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른 시도에서도 도시공사, 교통공사 등에서 다양한 센터업무를 하고 있음
- 그러나 센터 인원에 대한 고용방법과 운영문제 등에 대한 갈등 우려가 있음

③ 입찰을 통해 장애인단체에 위탁운영 하는 방안

- 전남복지재단은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2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가 도내 전 지역에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시·군 통합 광역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현재 대전시에는 24개의 장애인 단체가 있으며,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2018년도부터 대전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음
- 따라서, 입찰을 장애인단체를 통하여 이동지원센터 업무를 위탁 수행 하도록 할 수 있음
- 단점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될 이동지원센터 업무가 장애인 단체가 바뀌게 되면 새로운 인력구성으로 인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음
- 따라서, 업무의 연속성과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 나가야 함

차 례

1장 서론	1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4
2절. 연구의 범위	5
1. 시간 및 공간적 범위	5
2. 내용적 범위	5
2장 현황조사 및 관련법령	7
1절. 교통약자 현황	9
2절. 등록장애인 현황	11
3절. 관련법령	13
3장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 방안	17
1절.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의 필요성	19
2절.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사례	22
3절.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 방안	25
4장 결론 및 정책제언	41
1절. 결 론	43
2절. 정책제언	44

표 차례

[표 2-1] 전국 유형별 교통약자 추계인구	9
[표 2-2] 2015 전국 교통약자 현황	10
[표 2-3] 대전시 2018년 장애인 등록현황	12
[표 2-4] 장애인등편의법과 교통약자법 비교	14
[표 3-1]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인력구성	23
[표 3-2] 지난 4년간 실적 종합표	24
[표 3-3] 대전시 장애인복지과 업무	26
[표 3-4] 대전시 민원처리 현황	27
[표 3-5] 대전시 장애인복지과 업무	27
[표 3-6] 종류별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28
[표 3-7] 지역별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29
[표 3-8] 경기도와 대전시 비교	32
[표 3-9] 경기도, 수원시, 대전시 비교	33
[표 3-10] 2018년도 지자체별 장애인콜택시 차량현황	34
[표 3-11]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차량현황	35
[표 3-12] 부산시 장애인콜택시 차량현황	35
[표 3-13] 대전시 장애인 단체 현황	39

그림 차례

[그림 2-1]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계획	11
[그림 3-1] 이동편의센터 사업실적	24
[그림 3-2] 대전시 부적합 사례 비교	31
[그림 3-3]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35
[그림 3-4] 두리발 운행시간	36
[그림 3-5] 대전시 무지개복지공장	36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1장

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가 수원시에 처음 생기면서 전국적으로 센터설립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 수원시는 전국최초로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한 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고령자·임산부·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제공 및 기술지원을 하고 있으며,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설치기준에 맞는 설계 도서를 검토하고 현장점검을 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음
 - 또한,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함¹⁾
- 광역단체별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조례 개선 및 이동편의시설의 통합관리 운영방안 마련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 방안」을 권고하였음
- 이동편의시설 관련 전문지식, 기술 등을 보유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로 설립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대전 지역에 대한 설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부서 간 분장되어 있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 업무를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주관부서 선정 및 운영에 관한 내부지침 마련방안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음

1) 이동편의시설: 버스정류장, 터미널, 철도역 등의 여객시설과 보행로, 육교 등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을 의미함

2. 연구의 목적

-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타당성 및 통합관리 운영방안을 검토하여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 업무를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지침마련을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음
 -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건립하여 도비를 들여 사업을 사고 있으며, 이동편의시설의 기술지원, 실태조사, 민원 해결,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이에 근거하여 많은 시도에서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건립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연구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임
 - 본 연구는 경기도의 사례를 바탕으로 대전시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 업무의 지원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절. 연구의 범위

1. 시간 및 공간적 범위

1) 시간적 범위

- 시간적 범위는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2020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함

2) 공간적 범위

- 공간적 범위는 대전시 전체로 설정함
 - 대전시 전체를 대상으로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설립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내용적 범위

-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관련 타당성 검토
 - 조직구성
 - 설치 및 운영전략
- 이동편의시설 통합관리 방안

현황조사 및 관련법령

1. 교통약자 현황
2. 등록장애인 현황
3. 관련법령

2장

2장 현황조사 및 관련법령

1절. 교통약자 현황

- 교통약자는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2017년 26.8%에서 2021년 29.0%까지 연평균 2.3%가 증가할 전망이다

[표 2-1] 전국 유형별 교통약자 추계인구

(단위 : 명, %)

구분	총 인구	교통약자						
		소계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 동반자	
2017	인구	50,976,519	13,670,196	1,505,787	7,156,170	432,819	2,308,235	2,267,185
	구성비	100.0	26.8	3.0	14.0	0.8	4.5	4.4
2018	인구	51,140,690	13,913,121	1,505,641	7,437,375	429,004	2,276,134	2,264,967
	구성비	100.0	27.2	2.9	14.5	0.8	4.5	4.4
2019	인구	51,293,706	14,230,917	1,505,495	7,760,744	425,222	2,277,541	2,261,915
	구성비	100.0	27.7	2.9	15.1	0.8	4.5	4.4
2020	인구	51,435,495	14,602,305	1,505,349	8,132,783	421,474	2,283,561	2,259,138
	구성비	100.0	28.4	2.9	15.8	0.8	4.4	4.4
2021	인구	51,566,389	14,968,999	1,505,198	8,537,304	417,765	2,254,207	2,254,525
	구성비	100.0	29.0	2.9	16.6	0.8	4.4	4.4
증가율		0.3	2.3	-0.01	4.5	-0.9	-0.6	-0.1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6

출처: 국토교통부, 제 3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17~2021)

[표 2-2] 2015 전국 교통약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총 인구	교통약자					
		소계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 동반자
인구	51,529,338	13,228,203	1,412,994	6,775,101	438,420	2,334,907	2,266,781
인구 대비	100.0	25.7	2.7	13.1	0.9	4.5	4.4
교통약자	-	100.0	10.7	51.2	3.3	17.7	17.1

주: 교통약자인구의 중복산정을 피하기 위해 장애인 중 영유아(0~4세), 어린이(5~9세), 고령자(65세 이상) 제외

출처: 국토교통부, 제 3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17~2021)

2절. 등록장애인 현황

- 대전시의 인구는 2018년 기준 1,489,936명이며, 그 중 등록장애인은 72,927명으로 전체 인구의 4.9%로 나타남
- 현재 장애인 등급은 6종류로 나뉘어져 있으나 2019년 7월부터는 장애 등급제가 폐지될 예정임
- 장애인 등급제는 2019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며 ‘장애 등급’이란 단어는 ‘장애 정도’로 바뀜
- 현재까지 장애인활동서비스는 1~3급의 중증장애인에게만 제한되었으나 종합적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4급 이하의 장애인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예정임

장애인 등급제 폐지

종합조사 단계적 확대 계획

시기	서비스분야	서비스 내용
'19년	일상생활지원	활동지원, 보조기기 지급, 거주시설 입소자격 부여
'20년	이동지원	장애인 전용 콜택시, 주차구역 이용 등
'22년	소득·고용지원	장애인연금 지급, 장애인의무고용 대상 포함 등

[그림 2-1]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계획

출처: 대한민국 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보이는게 다가 아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제공

[표 2-3] 대전시 2018년 장애인 등록현황

(단위: 명)

구분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총계	72,927	6,166	9,835	12,565	10,018	15,408	18,935
지체	33,776	1,026	1,739	3,901	5,843	9,504	11,763
시각	7,080	937	177	297	351	608	4,710
청각	9,507	185	1,064	1,079	2,165	3,437	1,577
언어	571	6	73	247	245	0	0
지적	6,305	1,645	2,119	2,541	0	0	0
뇌병변	7,532	1,710	1,520	1,637	952	828	885
자폐성	984	392	462	130	0	0	0
정신	3,139	68	748	2,323	0	0	0
신장	2,569	145	1,798	2	30	594	0
심방	132	1	21	89	2	19	0
호흡기	296	39	74	172	1	10	0
간	304	4	11	14	14	261	0
안면	77	3	9	37	23	5	0
장루·요루	393	1	6	33	234	119	0
뇌전증	262	4	14	63	158	23	0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시도별 자료)

3절. 관련법령

- 현재 장애인 관련 법률은 크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과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으로 나뉘어져 있음
 -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된 것으로 장애인등편의법은 보건복지부가, 교통약자법은 국토교통부가 각각 주무부서로 되어 있어 세부기준이 서로 상이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
 - 일반적으로 장애인등편의법은 공원,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고 교통약자법은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에 대해 적합성을 관리하고 있음
- 교통약자법은 장애인등편의법에서 분리되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표 2-4]에서 비교한 것과 같이 장애인등편의과 교통약자법은 화장실 일반사항, 대변기, 유도안내시설, 승강기 등 세부 수치가 서로 상이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두 관련 법령을 통합하여 하나의 기준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표 2-4] 장애인등편의법과 교통약자법 비교

	장애인등편의법	교통약자법
화장실 일반사항	<p>1.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p> <p>2. 출입구(문)의 통과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p>	<p>1. 장애인전용화장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p> <p>2.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p>
대변기	<p>1.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1.6미터 이상, 깊이 2.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p> <p>2.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p> <p>가) 수평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0.7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되, (생략)</p> <p>나) 수직손잡이의 길이는 0.9미터 이상으로 하되, (생략)</p> <p>다) 장애인들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평손잡이와 수직손잡이는 이를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다. (생략)</p>	<p>1. 대변기의 칸막이는 유효바닥면적이 폭 1.4미터 이상이고,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좌측, 우측 활동공간 생략)</p> <p>2.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p>
유도 안내시설	<p>2.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은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바닥면으로부터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범위 안에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p>	<p>2. 여객시설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위치를 여객시설의 종합안내도 및 출입구 안내표시 등에 표기해야 하며, 외부 출입구 주변에도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위치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점자안내판 범위 생략)</p>

	장애인등편의법	교통약자법
승강기	<p>1. 승강기의 전면에는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 다만, 신축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폭을 1.6미터 이상</p> <p>2. 승강기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1미터 이상, 깊이 1.35미터 이상</p> <p>3.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 신축한 건물의 경우에는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p>	<p>1. 승강기의 전면에는 1.5미터×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p> <p>2.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1미터 이상, 깊이 1.4미터 이상</p> <p>3.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p>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 방안

1.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의 필요성
2.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사례
3.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 방안

3장

3장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 방안

1절.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의 필요성

1) 관련 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으며, 관련된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도·운영 9개 개선항목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법률 개선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안항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 공급자(행정기관) 중심의 기준적합성 심사제도를 이용자 참여가 가능한 심사제도로 변경
②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개선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별 세부기준 상이, 설치 범위의 불명확, 시각장애인의 위험요소 개선
③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장애인 안전시설편」(국토교통부 예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과 불일치한 관리지침의 현행화
④ 광역자치단체별, 조례 개선(2)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사업자에 대한 교육방법 등 제정, 광역별 기술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
⑤ 광역자치단체별, 여러 부서로 분장된 업무의 통합관리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주관부서 선정 및 통합관리방안 마련

도로(보도) 4개 개선항목

- ① 현실적인 실태조사 범위 마련
 - 교통약자가 많이 이용하는 장소 등 실질적인 실태조사 범위 포함
 - ② 복지시설 주변 접근로의 가이드라인 마련
 - 복지시설 건축 시 주변 접근로에 급경사 등 지형적 특성이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방안 마련
 - ③ 법령별, 이원화된 이동편의시설의 연계 강화방안 마련
 - 「교통약자법」과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설치주체가 다른 경우, 이동편의시설의 연계 강화방안 마련
 - ④ 설치가 미흡한 이동편의시설의 개선안 마련
 - 잘못 설치되거나, 미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계획 수립 등
- ※ 현황점검 시, 장애인 등 이용자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방안 마련

여객시설 3개 개선항목

- ① 여객시설의 상시점검 계획 수립
 - 환승복합시설 등 설치·관리가 미흡한 여객시설의 상시점검 계획 수립
- ※ 장애인 등 이용자가 참여하는 합동점검 및 기관간 협력방안 마련
- ② 행정제재의 내부절차 마련
 -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 행정제재에 대한 내부절차 마련
- ※ 재정이 열악하거나, 개선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 유예 또는 예외기준 모색
- ③ 버스정류장의 이동편의시설 점검·개선계획 수립
 - 중점개선항목 선정 및 연차별 개선 추진방안 마련

2) 점검대상 시설

○ 건축물, 도로에 대한 점검대상은 다음과 같음

<p>제1조(목적)</p> <p>이 규칙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5항, 제10조의3제2항, 제10조의6제2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8. 3.></p>
<p>제2조(인증 대상)</p> <p>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개별시설</p> <p>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p> <p>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p> <p>2.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p> <p>[전문개정 2015. 8. 3.]</p>
<p>제7조(대상시설)</p> <p>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1. 공원</p> <p>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p> <p>3. 공동주택</p> <p>4. 통신시설</p> <p>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p> <p>[전문개정 2015.1.28]</p>

2절.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사례

- 현재 교통안전공단에서는 매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에 의거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성 향상을 위한 효과적 정책수립을 위한 이동편의시설/수단/환경 현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위해 과업을 수행하고 있음
 - 짝수해에는 도 단위로 조사를 실시하고 홀수해에는 광역/특별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5년 단위로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이러한 실태조사는 교통사업자(또는 지자체)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 권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건물, 도로 등 시설물 설치에 있어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도폭 확보, 보도 시설물 유지보수, 점자블럭 설치 등에 대한 세부시설 기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음
 - 교통정책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며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음
 - 경기도에서 예산은 100%(연 1억5천~2억2천만원) 지원하고 있으면 현재 6명의 연력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3-1]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인력구성

직 위	경력 및 자격증	담당역할	비고
협회장	사회복지사 2급	대외협력	비상근
사무처장	사회복지사 2급	행정업무총괄	비상근
기술선임 (센터장)	건축기사,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재활복지경영사	기술업무총괄	상근
기술요원	교통기사	기술지원	상근
기술요원	교통기사	기술지원	상근
행정요원	사회복지사1급	행정지원	상근

○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도면검토, 현장기술지원)
-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지하철역사, 도로, 보호구역 등)
- 이동편의시설 관련 민원 해결(현장점검, 민원제기, 상담 등)
- 이동편의시설 관련 교육, 홍보, 연구, 정책, 자문 등
- 기타(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기술검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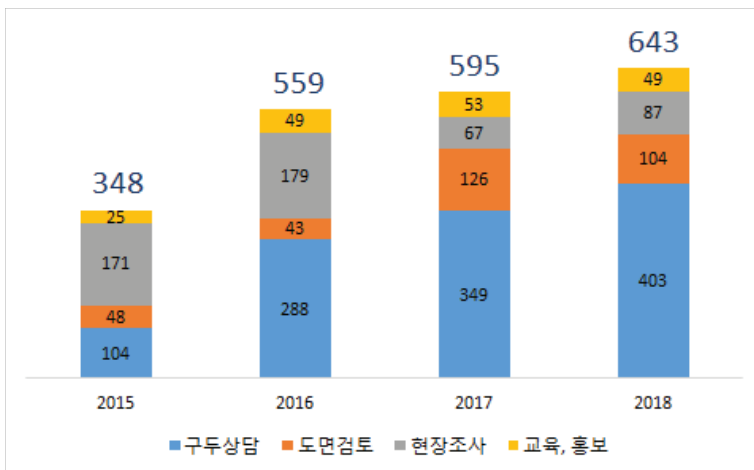
○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기술지원은 다음과 같음(2015년 5월 ~2018년 6월 기준)

- 유선상담은 총 700건 이상으로 나타남(이동편의시설 설치 방법 및 법적 기준 문의, 센터업무절차 문의 등)
- 대면상담은 총 118건 이상으로 나타남(이동편의시설 설치방법 전달)
- 도면검토는 총 270건 이상으로 나타남(도로 139건, 여객시설90건, 법정 계획 41건 등)
- 현장점검은 총 454건 이상으로 나타남(도로 216건, 여객시설 238건 등)

-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 교육을 하고 있음
 - 참석대상은 도 및 시·군 담당 공무원 및 유사기관이며, 2018년도부터 공공기관으로 확대됨
 - 이동편의시설 법률, 제도 및 세부설치기준 등을 교육하여 담당자의 인식 개선을 통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율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015년 이후 4년간 관련사업의 실적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

[표 3-2] 지난 4년간 실적 종합표

사업년도		2015	2016	2017	2018	총계	
계		348	559	595	643	2,145	
종합 상담실	구두 상담	유선상담	85	208	253	301	847
		대면상담	13	44	35	44	136
		기타상담	6	36	61	58	161
	도면 검토	여객시설	21	24	38	14	97
		도로	18	19	63	79	179
		기타	9	-	25	11	45
	현장 조사	여객시설	164	15	14	53	246
		도로	7	164	53	34	258
교육, 홍보		25	49	53	49	176	



[그림 3-1] 이동편의센터 사업실적

3절.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 방안

1) 대전시 장애인 관련 업무의 통합관리가 필요함

○ 장애인관련업무의 분산 문제

- 대전시의 경우 기존 또는 사유 건축물 또는 도로 시설에 대한 도면검토, 현장점검,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현재 없으며, 장애인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
- 장애인 관련 업무는 일반적으로 장애인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그 밖에 민원관련 내용은 국민 신문고를 통해 수집되고 있음

○ 장애인관련 민원을 처리할 전략 부서 필요

- 현재 민원은 통합적으로 시민봉사과에서 담당하여 관리하고 있음
- 구두로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는 따로 데이터가 저장되어 관리되고 있지 않으나 국민 신문고를 통해 들어온 민원의 경우는 데이터로 관리되고 있음. 하지만 세부적으로 카테고리화가 되어있지 않아 장애인 고충에 관한 민원을 따로 알기는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장애인에 관한 민원을 통합관리 할 필요가 있음
- 일반 민원 및 고충민원은 2017년도 대비 1,568건 감소하였으나 전자 민원은 14,681건이 증가함

[표 3-3] 대전시 장애인복지과 업무

직책	담당업무
장애인복지과장	- 장애인복지과 업무 총괄
장애인시설팀장	- 장애인복지시설 업무 총괄
장애인정책팀장	- 장애인정책팀 업무 총괄
재활지원팀장	- 재활지원업무 조정 및 운영 - 장애인활동지원업무 총괄 - 재활업무분야 약속사업 추진
주무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업무(장애인연금, 수당등) - 장애인등록업무 - 장애인보조기구지원사업 등
주무관	- 장애인단체 보조금 및 사업(행사)지원 - 장애인 비영리민간단체 사업 지원 - 장애인의 날 행사 추진 - 장애인권익증진(차별금지 등) 및 인식개선업무
주무관	-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지원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주무관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발달재활 서비스, 언어발달,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발달장애인 지원사업(공공후견, 부모상담, 휴식지원,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지원)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운영
주무관	- 장애인재활병원, 장애인종합복지관(장애인평생교육원)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 장애인편의시설 사전검사 기능강화 및 시민축진단 운영, 전수 조사 - 권역재활병원 프로그램 운영지원
주무관	- 어린이재활병원 관련 업무 추진 시립장애인시설 민간위탁 및 관리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주무관	-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 장애인 채용박람회 및 장애인기능경기대회 - 척수장애인재활사업 운영

출처: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표 3-4] 대전시 민원처리 현황

구분	합계		일반(고충)민원		전자 민원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2017년	53,651	53,258	44,108	43,814	9,543	9,444
2018년	66,764	66,735	42,540	42,511	24,224	24,224
증감	13,113	13,447	△1,568	△1,303	14,681	14,780

출처: 대전시 내부자료

- 전체 민원 중 교통 분야가 80.6%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주로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버스위치 안내 등에 관한 민원이 가장 많음
- 교통, 건설도로, 환경 분야가 온라인 민원의 9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허가 등 법정민원이 아닌 건의·질의·요청(시설보수요청, 대중교통, 환경 등)에 관한 주민생활 불편사항이 다수를 차지함
- 신청 경로별 민원처리 접수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3-5] 대전시 장애인복지과 업무

구분	합계	과학 경제	행정	문화 체육	보건 복지	환경	교통	도시 주택	건설 도로	안전 소방
합계 (%)	24,224 (100)	210 (0.9)	265 (1.1)	127 (0.5)	415 (1.7)	1,081 (4.5)	19,536 (80.6)	192 (0.8)	1,888 (7.8)	510 (2.1)
대전시에 바란다	938	34	67	38	338	94	244	41	73	9
국민 신문고	3,659	80	122	59	29	133	2,878	106	187	65
생활 불편(앱)	16,274	69	41	11	14	409	14,923	11	564	232
안전 신문고	1,737	9	3	7	1	355	287	4	906	165
기관 홈페이지	1,574	14	25	12	28	84	1,198	20	157	36
기타 (서신, 팩스 등)	42	4	7	0	5	6	6	10	1	3

출처: 대전시 내부자료

○ 대전시 장애인복지시설은 총 173개소가 있으며 동구와 서구에 주로 분포해 있음

- 동구(42개소), 서구(42개소), 대덕구(36개소), 유성구(29개소), 중구(24개소) 순으로 나타남
- 장애인복지시설 중 주간보호시설이 41개소로 가장 많으며 전체시설의 약 23.7%를 차지함. 공동생활시설은 34개소로 두 번째로 높으며 전체시설의 약 19.7%를 차지함

[표 3-6] 종류별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구분	총계	거주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타시설				
		소계	유형별	단기보호	공동생활	소계	복지관	주간보호	체육시설	생활이동	수어통역	점자도서관	의료재활	재활치료	소계	직업재활	생산물판매	성폭력
총계	173	74	21	19	34	72	8	41	3	1	5	1	2	11	27	25	1	1
동 구	42	21	2	3	16	18	3	11			1			3	3	3		
중 구	24	10	2	4	4	12	1	6		1	1	1		2	2	2		
서 구	42	19	10	3	6	15	1	10	1		1			2	8	8		
유성구	29	10	2	5	3	13	2	4	1		1		2	3	6	5	1	
대덕구	36	14	5	4	5	14	1	10	1		1			1	8	7		1

[표 3-7] 지역별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구 분	계	동 구	중 구	서 구	유성구	대덕구	
총 계	173	42	24	42	29	36	
거주 시설	소 계	74	21	10	19	10	14
	유형별거주	21	2	2	10	2	5
	단기거주	19	3	4	3	5	4
	공동생활	34	16	4	6	3	5
지역 사회 재활 시설	소 계	72	18	12	15	13	14
	장애인복지관	8	3	1	1	2	1
	주간보호센터	41	11	6	10	4	10
	장애인체육시설	3	0	0	1	1	1
	생활이동지원센터	1	0	1	0	0	0
	수어통역센터	5	1	1	1	1	1
	점자도서관	1	0	1	0	0	0
	의료재활시설	2	0			2	
	재활치료시설	11	3	2	2	3	1
기 타 시설	소 계	27	3	2	8	6	8
	직업재활시설	25	3	2	8	5	7
	생산물 판매시설	1	0	0	0	1	0
	성폭력 피해시설	1	0	0	0	0	1

2) 필요업무

-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의 업무는 일반적으로 이동편의시설의 설계에 대한 도면검토부터 기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 민원접수 및 현장점검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그 밖에 홍보, 교육 등의 업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대전시에도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시설물 개선을 하고 있으나 많이 미흡한 실정임
 - 또한, 이미 개선된 시설물의 경우도 장애인 보행환경에 맞도록 설치되지 않은 지점이 많아 전반적인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아래 그림은 대전시의 보행환경 및 정류장시설 등의 잘 된 사례와 잘못된 사례를 살펴본 것임
 - A에 해당하는 사진은 교통약자가 이동시 불편 및 문제가 생기는 보행 환경이며 B에 해당하는 사진은 잘된 사례로 A와 B를 비교하였음
 - 점자블럭이 미설치 된 경우 시각장애인은 정지해야 하거나 특정 장소라는 인지를 하지 못하여 시각장애인들의 보행환경에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 보도의 보행로 폭이 너무 좁거나 장애물이 존재하여 휠체어 이용이 어려운 경우와 보도블럭이 파손되어 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개선이 필요함
 - 정류장은 휠체어 진입이 가능한 통로가 확보되어야 하며 시각장애인의 정류장 이용을 돕기 위하여 장소와 위치의 인지가 가능한 점자블럭이 설치되어야 함
 - 현재 대전시는 교통약자의 이동 환경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으로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이나 부서를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함



[그림 3-2] 대전시 부적합 사례 비교

http://m.gnews.gg.go.kr/News/news_view.asp?number=201802131748267121C076&s_code=C076

<http://baeksan.egloos.com/m/1013894>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73016>

<http://blog.daum.net/yhm100>

3) 조직구성

- 앞서 언급했듯이 장애인 관련 시설의 경우 통합 관리하는 전담부서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총괄 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필요함
 - 현재 대전시에서는 장애인 관련 업무가 분산되어 있으며, 세부 기준에 대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없음
 - 경기도의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별도로 채용하여 이를 전담 할 수 있는 조직 구성이 필요함
- 대전시의 장애인 시설관련 민원 또는 업무의 현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확한 인력을 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경기도와 대전시를 단순 비교하면 대전시 면적은 경기도의 약 0.05배이며 인구는 경기도의 약 0.11배, 도로연장은 경기도의 0.15배임

[표 3-8] 경기도와 대전시 비교

(2019년 05월 기준)

지역	면적(km ²)	인구(명)	도로연장(km)
경기도	10,185	13,145,482	14,013
대전시	539.35	1,484,398	2,140

출처: KOSIS, 시도별·도로보급률

- 따라서, 수원시의 사례를 바탕으로 필요인력 구성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수원시는 (사)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와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중이며, 경기도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와 별개로 운영됨
 - 수원시와 대전시를 단순 비교하면 대전시 면적은 수원시의 약 4.5배이며 인구는 약 1.2배, 도로연장은 2.3배임
 -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조직구성을 보면 센터장, 사무국장, 기술요원(토목기사1명, 교통기사1명), 행정요원1명으로 총6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전시에서 센터를 운영할 경우 최소 6명의 인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표 3-9] 경기도, 수원시, 대전시 비교

지역	면적(km ²)	인구(명)	도로연장(km)
경기도	10,185	13,145,482	14,013
수원시	121.04	1,197,648	949.16
대전시	539.35	1,484,398	2,140

주: 면적과 인구는 2019년 05월 기준, 도로연장은 2018년 기준

출처: KOSIS, 시도별·도로보급률, 대전시청 홈페이지, 경기도 홈페이지, 수원시청 홈페이지

- 경기도와 수원시의 조직 업무를 기본으로 하여 대전시의 이동편의시설 기술 지원 업무는 도면검토, 현장점검,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이 될 것이며, 추후 업무의 양에 따라 추가 인원 배치를 검토할 수 있음

4) 운영방안

- 장애인 관리업무는 시에서는 총괄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됨
- 운영의 경우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과 위탁운영 하는 방안이 있음
- 장애인콜택시와 더불어 장애인 관련 업무를 ①시설관리공단을 통하여 같이 하는 방안, ②시 산하기관에 위탁운영하거나 ③입찰을 통해 장애인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 등이 있음

□ 직접운영

- 시에서 전담인원을 두고 장애인 관련 업무를 통합관리 하는 방법이며, 이를 위해서는 꾸준히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전문직 공무원이 필요함
 - 장애인 관련 업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공무원의 잦은 보직이동으로 인하여 전문성을 갖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서는 전문직 공무원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등 수반되는 부담 등에 대한 재원 마련이 필요함(서울시의 경우 공무원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위탁운영

① 시설관리공단을 통한 위탁운영 방안

- 많은 시도에서는 장애인콜택시 업무를 시설관리 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이동지원센터를 같이 설치하여 함께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대전시의 경우 시설관리공단이 아닌 복지재단에서 장애인 콜택시 업무를 수행 중에 있음
- 2018년도 지자체별 장애인 콜택시 차량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3-10] 2018년도 지자체별 장애인콜택시 차량현황

구분	휠체어 차량	일반 택시 차량	임차(바우처) 택시 차량
서울	437대 (슬로프 279대, 리프트 157대, 버스 1대)	50대	8,103대
부산	128대 (슬로프 121대, 다인승 5대, 버스 2대)	-	914대
대구	128대 (슬로프 128대)	-	260대
인천	145대 (슬로프 78대, 리프트 67대)	-	150대
광주	116대 (슬로프 116대)	37대	-
대전	82대 (슬로프 77대, 리프트 5대)	90대	-
울산	58대 (슬로프 55대, 버스 3대)	21대	37대

○ 시설관리공단에서 장애인콜택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타시도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서울시설공단은 2003.01.01.부터 장애인 콜택시 100대(최초운행)로 운행을 개시함

[표 3-11]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차량현황

2003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2	2013	2014	2016
100대 (최초 운행)	120대 (증 20대)	170대 (증 50대)	220대 (증 50대)	280대 (증 60대)	300대 (증 20대)	360대 (증 60대)	410대 (증 50대)	424대 (증 14대)	437대 (증 13대)

출처: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그림 3-3]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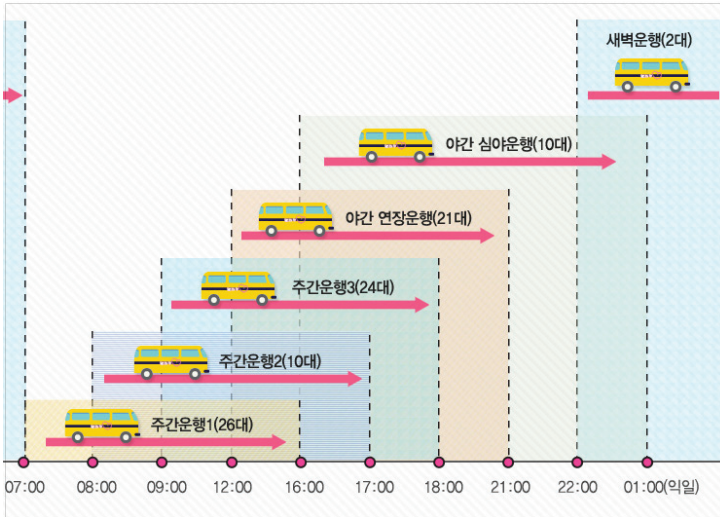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 부산시 시설공단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두리발'을 부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음

[표 3-12] 부산시 장애인콜택시 차량현황

2006	2007	2008	2009	2010	2013	2016	2017
10대 (최초 운행)	30대 (증 20대)	60대 (증 30대)	80대 (증 20대)	100대 (증 20대)	117대 (증 17대)	118대 (다인승 두리발 도입)	128대 (증 10대)

출처: 부산시설공단 홈페이지



[그림 3-4] 두리발 운행시간

출처: 부산시설공단 홈페이지

- 대구시 시설공단은 중증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하여 '나드리콜'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 최초 30대 운행을 시작으로 2019년 1월 기준 총 400대(특장차량 140대, 개인택시 260대)가 운행중임
- 대전시 시설관리공단은 무지개복지공장을 운영함. 무지개복지공장은 전국 최초 대전시의 직영체제로 지방공기업이 운영하는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이며,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인 주간보호실을 갖추고 있음



[그림 3-5] 대전시 무지개복지공장

출처: 대전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② 산하기관 위탁운영 방안

- 복지재단, 대전세종연구원, 도시공사 등과 같은 센터를 운영할 역량을 갖춘 비영리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이 있음
- 다른 시도에서는 도시공사, 교통공사 등에서 다양한 센터업무를 하고 있음
- 그러나 센터 인원에 대한 고용방법과 운영문제 등에 대한 갈등 우려가 있음

○ 타시도 사례

□ 도시공사 위탁운영

- 안양시 도시공사는 안양시로부터 2011년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최초 3대 운영을 시작하여 2018년에 총 28대를 운영하는 중임
- 화성시 도시공사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 활동지원을 위하여 2013년부터 '화성나래'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교통수단 운영 대수는 48대이며 바우처 택시는 30대임
- 광주시 도시관리공사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2008년에 설립하여 최초 8대 운영을 시작하고 2019년 1월 기준으로 총 149대(전용차량 116대, 전용택시 33대)를 운영하고 있음

□ 교통공사 위탁운영

- 인천시 교통공사는 2006년에 장애인콜택시 최초 20대를 운행하며 현재 총 295대(특장차 145, 바우처택시 150)를 운영하고 있음

○ 대전시의 경우 장애인콜택시 업무를 복지재단으로 이관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③ 입찰을 통해 장애인단체에 위탁운영 하는 방안

- 전남복지재단은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2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가 도내 전 지역에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시·군 통합 광역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현재 대전시에는 24개의 장애인 단체가 있으며,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2018년도부터 대전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음
 - 따라서, 입찰을 장애인단체를 통하여 이동지원센터 업무를 위탁 수행 하도록 할 수 있음
 - 단점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될 이동지원센터 업무가 장애인 단체가 바뀌게 되면 새로운 인력구성으로 인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음
 - 따라서, 업무의 연속성과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 나가야 함
- 대전시에서 현재 24개 장애인 단체가 활동하고 있음

[표 3-13] 대전시 장애인 단체 현황

(2018.07.04. 기준)

기관명		주소
1	국제장애인문화교류 대전시협회	대덕구 오정동 495-6
2	대전교통장애인재활협회	중구 보문로 246, 703호
3	대전근육장애인협회	중구 계룡로 825 희영빌딩 1층
4	대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중구 보문로 246, 708호
5	대전시각장애인연합회	중구 보문산로 44, 3층
6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동구 대전로 913, 은누리빌딩 3층
7	대전장애인문화협회	동구 삼성동 272-9번지 은호빌딩6층
8	대전장애인부모회	중구 보문로 246, 704호
9	대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
10	대전장애인정보화협회	-
11	대전접자도서관	중구 서문로 10
12	대전정신장애인에호인협회	유성구 와룡로 136번길 75 203동 2105호
13	대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대덕구 대화10길 103
14	대전척수장애인협회	중구 보문로 246, 707호
15	대한안마사협회 대전지회	중구 대흥로 10번길 53
16	새날장애인이룸센터	중구 보문로 246, 708호
17	한국농아인협회 대전시협회	동구 중앙로 200번길 66, 205호
18	한국예술문화진흥회 대전충남장애인예술협회	유성구 원신흥로37, 1004동 1906호
19	한국장우장애인협회 대전지부	중구 보문로 246, 702호
20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대전·충남지회	세종시 다솜1로 164, 202-703
21	한국장애인문화관광진흥회 대전시협회	중구 보문로 246, 708호
22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대전충청지부	중구 대둔산로 200번길 23-11, 101호
23	한국장애인IT협회대전IT협회	동구 중앙로 193번길 33
24	한국장애인연맹 대전DPI	중구 보문로 246, 708호

출처: 대전장애인맞춤복지정보 정보드림 홈페이지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 론
2. 정책제언

4장 결론 및 정책제언

1절. 결 론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가 수원시에 처음 생기면서 전국적으로 센터설립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 기술지원센터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함
- 이동편의시설 관련 전문지식, 기술 등을 보유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로 설립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대전 지역에 대한 설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광역단체별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조례 개선 및 이동편의시설의 통합관리 운영방안 마련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 방안」을 권고하였음
-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의 업무를 위한 전담인력의 필요성 및 통합관리 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 업무를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지침마련을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음
 -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건립하여 도비를 들여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동편의시설의 기술지원, 실태조사, 민원 해결,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이에 근거하여 많은 시도에서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건립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연구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임
 - 본 연구는 경기도의 사례를 바탕으로 대전시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 업무를 위한 전담인력 구성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절. 정책제언

□ 대전시 장애인 관련 업무의 통합관리가 필요함

- 대전시의 경우 기존 또는 사유 건축물 또는 도로 시설에 대한 도면검토, 현장점검,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현재 없으며, 장애인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
 - 현재 민원은 통합적으로 시민봉사과에서 담당하여 관리하고 있음
 - 구두로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는 따로 데이터가 저장되어 관리되고 있지 않으나 국민 신문고를 통해 들어온 민원의 경우는 데이터로 관리되고 있음. 하지만 세부적으로 카테고리화가 되어있지 않아 장애인 고충에 관한 민원을 따로 알기는 어려운 실정임

□ 대전시 장애인 관련 필요업무

- 장애인 이동편의지원 업무는 일반적으로 이동편의시설의 설계에 대한 도면검토부터 기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 민원접수 및 현장점검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그 밖에 홍보, 교육 등의 업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대전시에도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시설물 개선을 하고 있으나 많이 미흡한 실정임
 - 또한, 이미 개선된 시설물의 경우도 장애인 보행환경에 맞도록 설치되지 않은 지점이 많아 전반적인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조직구성

- 장애인 관련 시설의 경우 통합 관리하는 전담부서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총괄 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필요함
 - 현재 대전시에서는 장애인 관련 업무가 분산되어 있으며, 세부 기준에 대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없음
 - 경기도의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별도로 채용하여 이를 전담 할 수 있는 조직 구성이 필요함
- 따라서, 수원시의 사례를 바탕으로 필요인력 구성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수원시는 (사)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와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중이며, 경기도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와 별개로 운영됨
 - 수원시와 대전시를 단순 비교하면 대전시 면적은 수원시의 약 4.5배이며 인구는 약 1.2배, 도로연장은 2.3배임
 -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조직구성을 보면 센터장, 사무국장, 기술요원(토목기사1명, 교통기사1명), 행정요원1명으로 총6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전시에서 센터를 운영할 경우 최소 6명의 인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경기도와 수원시의 조직 업무를 기본으로 하여 대전시의 센터에서의 업무는 도면검토, 현장점검,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이 될 것이며, 추후 업무의 양에 따라 추가 인원 배치를 검토할 수 있음

□ 운영방안

- 장애인 관리업무는 시에서는 총괄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됨
- 운영의 경우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과 위탁운영 하는 방안이 있음
- 장애인콜택시와 더불어 장애인 관련 업무를 ①시설관리공단을 통하여 같이 하는 방안, ②시 산하기관에 위탁운영하거나 ③입찰을 통해 장애인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 등이 있음

1) 직접운영

- 시에서 전담인원을 두고 장애인 관련 업무를 통합관리 하는 방법이며, 이를 위해서는 꾸준히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전문직 공무원이 필요함
 - 장애인 관련 업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공무원의 잦은 보직이동으로 인하여 전문성을 갖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서는 전문직 공무원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등 수반되는 부담 등에 대한 재원 마련이 필요함(서울시의 경우 공무원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2) 위탁운영

① 시설관리공단을 통한 위탁운영 방안

- 많은 시도에서는 장애인콜택시 업무를 시설관리 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이동지원센터를 같이 설치하여 함께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대전시의 경우 시설관리공단이 아닌 복지재단에서 장애인

콜택시 업무를 수행 중에 있어 현 시점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짐

② 산하기관 위탁운영 방안

- 복지재단, 대전세종연구원, 도시공사 등과 같은 센터를 운영할 역량을 갖춘 비영리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이 있음
- 대전시의 경우 장애인콜택시 업무를 복지재단으로 이관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른 시도에서도 도시공사, 교통공사 등에서 다양한 센터업무를 하고 있음
- 그러나 센터 인원에 대한 고용방법과 운영문제 등에 대한 갈등 우려가 있음

③ 입찰을 통해 장애인단체에 위탁운영 하는 방안

- 전남복지재단은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2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가 도내 전 지역에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시·군 통합 광역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현재 대전시에는 24개의 장애인 단체가 있으며,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2018년도부터 대전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음
- 따라서, 입찰을 장애인단체를 통하여 이동지원센터 업무를 위탁 수행 하도록 할 수 있음
- 단점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될 이동지원센터 업무가 장애인 단체가 바뀌게 되면 새로운 인력구성으로 인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음
- 따라서, 업무의 연속성과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 나가야 함

참고문헌

국토교통부, 제 3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17~2021)

KOSIS 국가통계포털(시도별 자료)

http://m.gnews.gg.go.kr/News/news_view.asp?number=201802131748267121C076&s_code=C076

<http://baeksan.egloos.com/m/1013894>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73016>

<http://blog.daum.net/yhm100>

http://www.sisul.or.kr/open_content/main/

<http://www.bisco.or.kr/>

부 록

1.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전시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에 관한 재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5년 단위의 대전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평가
 - 2. 여객시설에 대한 조사와 개선사항
 - 3. 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 제공 및 개선사항
 - 4. 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

- 5.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정류장과 도로 등 시설물 정비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둔다.
 - 1. 법 제8조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
 - 3.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 4.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교육)

-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연 4시간 실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2.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3. 장애인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 4. 그 밖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저상버스 운영 활성화 등)

-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저상버스등(이하 “저상버스”라 한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1. 도로, 버스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 등의 사업추진
 - 2. 운행정보제공, 홍보 및 교육 등 저상버스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3. 저상버스운행계획 마련 등에 관한 사항

- ② 시장은 운행하려는 버스대수의 2분의 1을 저상버스로 대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버스음성안내장치 도입)

- ① 시장은 버스음성안내장치(“버스음성안내장치”란 버스자동안내방송과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도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교통사업자가 버스음성안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버스음성안내장치 운영)

- ① 시장은 버스음성안내장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버스정보안내시스템 등과 연계하는 등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버스음성안내장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통사업자, 운전자 및 이용자 등에게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교통약자가 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버스음성안내장치의 설치 및 운영 기준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동지원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센터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한다.
- ③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
2.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접수 및 자격심의
3. 특별교통수단 운행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상담과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버스정류소 등 교통약자 이동에 관한 접근 편의 제공 및 유지
6.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 ①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한다.
- ②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센터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자에게 가장 접근하기 쉬운 특별교통수단 운행자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④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 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이용자의 승·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운영 및 이용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1급과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3급 지적·자폐성 장애인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② 특별교통수단의 단계별 도입 계획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 선정기준과 이용범위 등 운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

-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일반택시요금의 100분의 50 이하로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범위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한 경우 대전광역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실태조사)

-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교통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는 5년마다 1회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대전광역시 교통

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제16조(위탁)

- ① 시장은 센터와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은 제16조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대전의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 장애인거주시설

- 가.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장애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용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주거지원·일상생활지원·지역사회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주거지원·일상생활지원·지역사회생활지원·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보호하고 재활에 필요한 주거지원·일상생활지원·지역사회생활지원·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라.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단기간 주거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지역사회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마.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주거시설

□ 유형별 거주시설 등

시 설 명	시설장	규 모(m ²)		생 활 자		종 사 자		입소대상 (설 치 일)
		대 지	시 설	정원	현원	정원	현원	
21개소				991	887	626	577	
사랑의집	노순일	839.4	678.28	19	15	11	10	성인지적장애인 (05. 7. 29)
하 랍	이성조	977	1,280.12	40	38	30	28	중증장애인 (10. 11. 4)
우리사랑	조해연	6,350	1,301.49	40	38	26	27	중증장애인 (08. 12. 19)
은혜의집	김향중	9,522	722.7	10	5	6	2	지적장애인 (18.01.12)
한마음의집	유광협	5,432	1825.23	70	54	36	36	시각장애인 (89. 12. 20)
한 몸	송호연	2,715	1,315.13	60	51	37	33	중증장애인 (92. 10. 14)
한뜻마을	유한별	3,455	781	37	37	26	25	지적장애인 (95. 1. 1)
동 심 원	김연환	15,466	2,254.7	80	62	39	36	성인지적장애 (02. 2. 1)
한 걸 음	유하나	2,100	991.01	53	47	38	33	아동·중증장애인 (13.6.5중증변경 (06. 7. 5)
삼 보 실	황영령	3,300	133	13	11	5	2	지적장애인 (06. 7. 26.)
행복마을	박광수	2,217	1,132.2	53	43	34	31	지적장애인 (95.1.1.)
연광자립원	백영권	10,590	1,319.98	30	30	23	21	중증장애인 (07. 4. 19)
행복누리	윤성은	4,850	864.07	30	29	24	24	중증장애인 (11.12.30)
한 줄 기	엄정미	2,301.84	950.22	30	30	26	23	중증장애인 (12.1.19)
성세재활원	김원식	7,261	2,860.42	70	60	46	35	지체장애인 (65. 8. 20)
아 담	노춘심	364.90	1,288.62	30	30	29	23	지적중증장애인 (14.9.23.)
정 화 원	윤여진	1,150	888.48	58	54	33	33	지적, 청각언어 (63. 9. 16)
온달의집	송명호	3,500	5,070	131	131	70	69	지적장애인 (72. 2. 3)
평강의집	노준호	833	1,671.42	77	64	38	37	중증장애아동 (95. 9. 6)
로 템	류미영	605.4	1,997.94	30	28	26	27	중증장애인 (10.12.16)
새등지	이혜영	1,137	848.52	30	30	23	22	지적장애인 (16.3.25.)

□ 단기거주시설

시 설 명	소재지	시설 규모	이용자		직원		주요내용 (운영주체)	설치일 (연락처)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계	19개소		243	214	114	85		
해마라기 단기보호센터	동구 산내로 474번길 17-50(상소동)	99.63㎡	15	15	6	5	지적장애 (개인)	'11.11.30 (274-1130)
참사랑 단기보호 (341-1130)	동구 산내로 1287번길50-13(남월동)	127.65㎡	10	9	6	4	지적장애 (개인)	14.4.11
파라나루단기보호 (625-2055)	동구 백룡로 57번길106-10(자양동)	84.42㎡	10	7	5	3	지적장애 (개인)	18.5.23
밀알단기보호 (226-0813)	중구 뿌리공원로 3번길 50(안영동)	227.95㎡	20	19	8	7	지적장애 (법인)	'08. 7.14
대전태화 단기보호센터	중구 보문산로 333번길 29(문화동)	150.28㎡	10	9	4	5	지적, 뇌병변 (법인)	'10.12. 6 (586-1560)
징검다리단기 (584-5035)	중구 보문로 341-16 (산성동)	233.43㎡	14	10	5	5	지적장애 (개인)	'06.12.21 '14.8.1(중증) '16.1.20 (시설변경)
시온마을단기 (531-9423)	중구 모암로 13번길 32(옥계동)	247㎡	10	10	5	4	지적장애 (개인)	'06.7.20 '08.1.18 (서구이전) '16.11.2 (공동→단기)
꿈이있는단기보호 (586-2195)	서구 당고개길 48-18(평촌동)	135.84㎡	15	11	6	4	지적장애 (개인)	'12. 5. 14
사랑누리 단기보호센터 (528-4522)	서구 변동서로 27번길 61(변동)	355.06㎡	15	13	7	5	지적장애 (개인)	'13. 1. 15
다솜 단기보호 (522-5373)	서구 용화6길 3(도마동)	84.03㎡	10	10	6	4	발달장애 (개인)	2016.5.17.
노아 단기보호센터 (862-3692)	유성구 학하복용서로 19, 2층	206.72㎡	15	15	8	6	지적지체등 (법인)	'06.12.19 '14.10.22 명칭변경
하늘품 단기보호센터 (546-1199)	유성구 유성대로 155번길 60-17 (교촌동)	197.7㎡	17	16	9	5	지적지체등 (법인)	'11. 8.31
늘푸른단기 (716-4243)	유성구 원계산로 182-34(1층)	129.89㎡	10	10	6	4	지적지체등 (개인)	'16.7.22(단기시설) ('09.12.31)
유성희망무지개 (545-2344)	유성구 원내로 10 (원내동 225-3, 1층)	114.01㎡	10	10	6	4	지적지체등 (개인)	'16.12.14
은샘공동체 (863-5020)	유성구 신성로 62번길 18	124.6㎡	10	8	4	3	지적뇌병등 (개인)	'17. 2. 2
가은누리 (623-8071)	대덕구 비래동로 7번길 9(비래동)	299.84㎡	20	16	8	6	지적, 자폐 (법인)	'07. 4.26 (623-8071)
예송동산 (672-5546)	대덕구 신탄진로 210번길 174	181.32㎡	11	10	6	4	지적장애 (개인)	12. 7. 20 (672-5546)
새여울 단기보호센터 (932-3595)	대덕구 덕암북로 10번길 72(덕암동)	118.44㎡	11	9	5	4	지적장애 (개인)	13. 1. 14 (932-3595)
사랑의집 단기 (634-8930)	대덕구 한밭대로 1033번길 15(신동아@ 5-801)	158.16㎡	10	7	4	3	지적장애 (개인)	09.11. 3 '14.10.23 (공동→단기)

□ 공동생활가정

시 설 명	소재지	시설규모 (시설설치)	이용자		직원		운영 주체	비 고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계	34개소		136	121	34	34		
한우리쉼터 (273-6490)	동구 옥천로 653번길 175-9(신상동)	181.5㎡	4	4	1	1	법인	'01.11.17
한우리쉼터 (283-6490)	동구 용운로 80(용운동) (용방마을 @ 308-403)	108㎡	4	4	1	1	"	'04.02.13
희망의집 (627-8963)	동구 우암로 296번길 9 (가양동)	85.75㎡	4	4	1	1	개인	'05.07.31
에벤에셀의집 (282-1112)	동구 너더리 3길 21 (관암동)	178.26㎡	4	4	1	1	"	'05. 7.29
주사랑쉼터 (274-3193)	동구 대전로 42번길 121 316-301호 (천동 위드힐)	135.41㎡	4	4	1	1	"	'07. 4. 25
대전밀알의 집 (484-1763)	동구 용운로 156번길 15 (용운동)	115㎡	4	4	1	1	법인	87. 1.27
시온마을사랑의집 (271-9423)	동구 대전로 340번길 20 (삼익세라믹 @ 105-502)	84.97㎡	4	3	1	1	개인	'09. 9. 25
에덴하우스 (285-3001)	동구 학교개길 82-10 (이사동)	118㎡	4	4	1	1	"	'10. 9. 14
베렐리엄의 집 (623-8123)	동구 동서대로 1778번길 115(가양동)	102.91㎡	4	4	1	1	"	'11. 7.28
해달별 (625-8550)	동구 계족로 489번길 73 (한숲 @ 101-101)(용전동)	114.75㎡	4	3	1	1	"	'11. 9. 30
호마노의 집 (626-8071)	동구 현암로 61번길 59 (삼성동)	256.77㎡	4	3	1	1	"	12. 7. 17 (14.9.25이전)
정원 (070-8738-8875)	동구 대전로 340번길 20 (삼익세라믹@105-105)	118㎡	4	4	1	1	"	12. 9.10
민주네 쉼터 (282-0380)	동구 새울로 91번길 14-14	62㎡	4	3	1	1	"	'14. 4. 9
주사랑의집 (272-3190)	동구 대전로 542번길 121, 313동103호(천동 위드힐@)	118.53㎡	4	4	1	1	개인	'15.01.02
우리들 (285-2830)	동구 학교개로74-27(이사동)	124.64㎡	4	4	1	1	개인	'15.01.02
에셀의집 (272-3194)	동구 대전로542번길 121 301동203호(천동 위드힐@)	101.89㎡	4	3	1	1	개인	'17.03.07
베데스다 (526-6564)	중구 유등천동로 568-6(태평2동)	137㎡	4	3	1	1	"	03. 6.24 15.11.27 주소변경
좋은친구들 (282-6040)	중구 봉소투로 24-22 (석교동)	89㎡	4	4	1	1	"	'05. 9.28

철만한물가 (257-8004)	중구 부용로 72번길 1 (부사동)	115.2㎡	4	4	1	1	''	'06. 9.14
편안한 컴퓨터 (584-7799)	중구 계백로 1566-75 (유천동)	78.44㎡	4	4	1	1	''	'07. 1.24
도토리 한알 (522-9457)	서구 복수동로 87번길 29-12, 402호(복수동)	172.37㎡	4	3	1	1	법인	00. 12. 4
사랑누리 (522-4522)	서구 배재로 155-7 107동 102호(도마동, 경남@)	84.51㎡	4	3	1	1	개인	'09. 6.10
하늘 (362-6513)	서구 정림로 11, 103동 102호(정림동,늘푸른@)	59.98㎡	4	3	1	1	개인	15.11.18.
하숨 (524-6459)	서구 관저북로 52,101동 106호(관저동,대자연@)	99.99㎡	4	3	1	1	개인	16.10.01.
그린하우스 (542-8108)	서구 가수원중로57번길 72(가수원동)	106.53㎡	4	4	1	1	개인	17.03.01.
실로암 (543-1187)	서구 관저로84, 806-104 (관저동, 구룡마을)	49.76	4	1	1	1	개인	18.12.13
행복공동체 (826-8591)	유성구 364번길 91 경남아너스빌 602호	86.575㎡	4	4	1	1	개인	'06.11.23
하늘꽃 (543-2199)	유성구 유성대로 155번길 109-5번지	135.52㎡	4	4	1	1	개인	'12. 5.18
느티나무 (545-9847)	유성구 진잠옛로 35-25 1층 101호	135.14㎡	4	4	1	1	개인	'15.11.27
해뜨는 집 (620-8703)	대덕구 대화2길 24(대화동)	73.5㎡	4	4	1	1	법인	'03. 1.28
늘 품 (637-1837)	대덕구 우암로 491번길 41 (비래동)	301.8㎡	4	3	1	1	''	'06.11. 9
섬 돌 (637-1831)	대덕구 중리동로 46 (중리동)	93.78㎡	4	3	1	1	''	'08.11. 3
펼그림복지원 (624-0029)	대덕구 중리북로 37번길 89 (중리동)	221.42㎡	4	4	1	1	개인	'10. 8.23
드림장애인공동생활 (930-7330)	신탄진로 804번길 48 (신탄진동)21	124.3㎡	4	4	1	1	''	'12. 3. 6

□ 연도별 신고현황

구분	계	'90년 이전	'91~ '00	'01~ '05	'06~ '10	'11~ '14	'15	'16	'17	'18
계	75									
동구	22	1		5	4	7	3		1	1
중구	10			2	5				2	1
서구	19	2	2	4	5	1	2	1	1	1
유성	10	1			2	3	1	2	1	
대덕	14	1	1	5	3		1			

□ 장애인복지관

시 설 명	소재지	시설규모	종사자	주요내용	비고
계	8개소		257		
밀알복지관	동구 우암로 48(삼성동)	부지 432.4㎡ 건물 1,940㎡	25	의료, 직업, 교육, 심리, 재활	'04. 9. 1개관 (627-0900)
동구아름다운복지관	동구 안골로 49 (구도동)	부지3,565.6㎡ 건물2,765.11㎡	28	교육, 직업, 재활, 심리 등	'17.4.20개관 (282-9600)
시립산성종합복지관	중구 유등천로 232(산성동)	부지 3,637.1㎡ 건물 3,197.89㎡	34	사회교육사업계몽, 홍보사업 등	'00. 12.22개관 (586-8033)
시립손소리복지관	동구대전천동로 508(원동)	부지 공동사용 건물 1860.52㎡	22	의료, 직업, 교육, 심리, 재활	'15. 3. 3개관 (345-9900)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유성대로 298번길 175(용계동)	부지 3,305.8㎡ 건물 2,409.76㎡	32	의료, 직업, 교육, 심리, 재활	'88. 6.22개관 (540-3500)
유성장래인종합복지관	북유성대로 166 (죽동)	부지 2,968.9㎡ 건물4,398.6㎡	52	사회교육사업계몽, 홍보사업 등	'04.12.15개관 (822-3637)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	대덕구 신탄진로 77(연축동)	부지 2,576㎡ 건물2,175.5㎡	22	의료, 직업, 교육, 심리, 재활	'07. 9. 18개관 (637-8848)
행복한 우리복지관·장애인 평생교육원	서구 계백로 1093-32(가수원동)	부지 6,607㎡ 건물6,303.85㎡	42	교육, 직업, 재활 평생교육 등	'13. 2.12 개관 (331-1155)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시 설 명	소재지	시설 규모	이용자		직원		주요내용	비고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계	41개소		608	537	185	146		
명은주간보호센터 (632-7338)	동구 우암로 50번길 16(삼성동)	77㎡	15	8	3	3	장애아동	'01. 12. 13
생명주간보호센터 (286-9190)	동구 동부로 56-7(판암동)	105.3㎡	15	12	4	3	장애아동	'07. 6. 1.
파랑새주간보호 (070-8613-8336)	동구 동대전로 110번길 164(대동)	217.2㎡	25	25	8	6	장애아동 (야간 2명포함)	'09. 5. 29.
꿈이있는 주간보호 (274-0196)	동구 대전천동로414 (인동)	72.74㎡	15	15	6	4	장애아동	'10. 9. 30 17.4.12 장소변경
판암 주간보호센터 (285-0028)	동구 동부로 56-34(판암동)	73.78㎡	15	10	4	3	장애성인	'10. 12. 24
초록나무주간보호센터 (383-7072)	동구 동서대로 1778-115(가양동)	111.3㎡	15	15	5	5	장애성인	'11. 1. 25
시온마을장애인주간보호센터 (531-9423)	동구 이사로 18번길 24(대별동)	72.18㎡	15	8	3	3	장애아동	'12. 5. 30
한울장애인주간보호센터 (628-2374)	동구 가양로 72	201.06㎡	20	15	5	3	장애성인	12. 10.18
기쁜우리주간보호 (524-0591)	동구 흥도로 5-14	141.42	15	15	5	4	지적장애	'13. 9. 25
두손주간보호센터 (283-2223)	동구 산내로 1315번길5-6(낭월동)	124.92㎡	15	16	5	3	장애아동 성인	'15.01.02
대전주간보호센터 (632-0691)	동구 소량길10(삼성동)	258.94㎡	12	10	4	3	장애아동	'15.09.07
산성종합복지관 주간 (586-8033)	중구 유등천로 232(산성동)	65㎡	15	15	6	4	장애성인 (시각)	'02. 10. 18
샤론원주간보호 (585-9525)	중구 대둔산로 494-29(산성동)	139㎡	15	14	6	3	장애아동	'03. 10. 15

밀알주간보호센터 (242-0813)	중구 뿌리공원로 7번길 54(안영동)	399㎡	25	24	8	5	장애성인	'04. 8. 5 '17.7.26이 전
대전태화주간보호 센터 (586-1500)	중구 보문산로 333번길 29(문화동)	115㎡	12	12	5	4	장애성인	'07. 3. 15.
예지연 주간보호 (283-5915)	중구 보문로 19번길 14(문창동)	100.79㎡	15	14	6	3	장애성인	'10. 8. 31
실만한 물가 (257-8004)	중구 부용로 72번길 1(부사동)	105.6㎡	15	13	6	4	지적장애	'14. 3. 26
도토리주간보호센터 (533-9457)	서구 갈마로 212번길 20-5(내동)	93.78㎡	15	11	5	4	장애아동, 성인	'05. 9. 12 (주말 2포함)
관저장애인주간보 호센터 (545-6810)	서구 구봉로 13 (관저동)	103.14㎡	15	13	3	3	장애아동	'05. 12. 29
월평발달장애인주 간보호센터(488-5 166)	서구 월평북로 11 (월평동)	127.9㎡	15	15	4	3	발달장애 아동	'06. 1. 2.
정림발달장애인 주간보호(584-4451)	서구 계백로 1286번길86(정림동)	150㎡	15	13	4	4	발달장애 아동	'08. 8. 22
아희장애인주간보 호센터 (538-1177)	서구 갈마로 211번길 24(괴정동)	78.48㎡	15	12	3	3	발달장애 아동	'09. 1. 8
라파장애인주간보 호센터 (482-9301)	서구 정림서로 134-15(정림동)	92.46㎡	15	14	3	4	장애성인	'11. 1. 17
장애인주간보호센 터헬로 (070-4422-7002)	서구 도솔로 151(도마동)	121㎡	10	8	3	3	지적,지체	'13.8.16
단비장애인주간보 호센터 (536-1771)	서구 괴정로181번길 (용문동)	97.92㎡	10	10	5	3	발달장애 인 (성인)	15.07.31.
힘찬장애인주간보 호센터 (545-0101)	서구 유등로43번길 6-9(복수동)	88.7㎡	10	10	3	3	발달장애 인 (성인)	16.09.26.
늘사랑특수교육원 (369-0322)	서구 대신1길48(도마동)	73.20	10	8	3	2	발달장애	18.2.23.
시립장애인종합복 지관 주간(540-3587)	유성구 유성대로 298번길175(용계동)	80㎡	15	14	5	4	장애성인	'99. 3. 1

이삭주간보호센터 (867-3692)	유성구 학하북용서로 19. 3층	206.72㎡	15	15	5	4	장애아동	'04. 8. 23 '14. 10. 22 명칭변경
유성구장애인종합 복지관 주간(822-3637)	유성구 북유성대로 166(죽동)	75.60㎡	15	15	5	3	장애성인	'05. 5. 10
행복나무특수교육 원 주간(542-1003)	유성구 진잠로 74번길 24(원내동 1층)	109㎡	10	10	4	3	장애아동	'12. 3. 12
가나특수교육원 (637-3025)	대덕구 신탄진로218번길 57-9 (와동)	297.71㎡	20	13	4	4	장애아동 장애성인	'01. 12. 12.
로템나무주간보호 센터 (622-0675)	대덕구 대전로 1081 (오정동)	226㎡	12	12	4	4	중증 장애인	'08. 9. 11.
대덕구종합사회복 지관 주간(070-7858-0 736)	대덕구 덕암로 234번길 44 (덕암동)	143.46㎡	20	14	5	5	장애아동 장애성인	'04. 7. 6.
대덕구장애인종합 복지관 주간(637-8848)	대덕구 신탄진로 77 (연축동)	71㎡	15	13	4	4	장애성인	'08. 2. 22.
엘림특수교육원 (626-3026)	대덕구 한남로 88번길 24(오정동)	260.43㎡	20	20	6	4	장애아동	'10. 1. 19.
해오름주간보호센 터 (627-3012)	대덕구 신탄진로 218번길 32 (와동)	158.3㎡	15	11	4	3	지적 장애인	'12. 3. 30.
포도나무주간보호 센터 (622-0674)	대덕구 대전로 1081 (오정동)	236㎡	12	12	4	4	중증 장애인 (성인)	'08. 9. 1 변경: '13. 6. 4 (단기→주간)
드림장애인주간보 호센터 (070-8126-7330)	대덕구 신탄진로804번길 48(신탄진동)	66㎡	10	10	3	3	장애아동 장애성인	'13. 7. 29
열매주간보호센터 (621-3026)	대덕구 한남로 137번길 57(오정동)	93㎡	10	8	3	3	장애성인	'15. 12. 21.
행복이음주간보호 센터 (632-2279)	대덕구 중리서로 76, 1층(중리동)	98.47㎡	15	15	4	3	장애아동 장애성인	'16. 6. 1.

※ 종사자 배치기준 : 시설장 1명, 사회재활교사 장애인 4명당 1명, 기능직 1명(사회재활 겸직)

□ 연도별 신고현황

구분	계	'90년 이전	'91~ '00	'01~ '05	'06~ '10	'11~ '14	'15	'16	'17	'18
계	40									
동구	13			2	4	4	2		1	
중구	6			3	1	2				
서구	11			3	2	2	1	1		1
유성										
대덕	10			2	4	2	1	1		

□ 장애인체육시설

시 설 명	소재지	시설규모 (시설설치)	직원	주요내용	비 고
계	3개소		32		
서구건강체련관 (488-3054)	서구 둔산서로 100(둔산동)	건축연면적 2,847.32㎡	12	수영장, 체력단련실	'01. 7.11
성세체육관 (540-3280)	유성구 유성대로 298번길 175	건물 1,047.1㎡	2	농구장, 체력단련실	'89. 1. 1
시립체육재활원 (637-9888)	대덕구 대화로 10 (대화동)	부지 3,034.72㎡ 건평 4,520㎡	18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장애인단체연합 회 ('00.1.1)

□ 생활이동지원센터 등

시 설 명	소재지	시설규모	종사자	주요내용	비 고
생활이동지원센터	1개소		12		
장애인생활이동 지원센터 (226-8040)	중구 보문산로 44,403호(산성동)	차량 8대	12	민원대행, 외출도움 등	(사)시각장애인 연합회
수어통역센터	5개소		32		
대전광역시수어통 역센터지역지원본부 (673-1518)	동구 중앙로200번길 66, 2층 205호(원동)	362.43㎡ (‘07.04.10)	8	청각장애인 수화통역	(사)한국농아인협회 대전협회
중구 수어통역센터 (581-0143)	중구 중앙로 13번길39(용두동)	111.33㎡ (10. 1. 4)	6	청각장애인 수화통역	(사)한국농아인협회 대전협회중구지부
서구수어통역센터 (488-1041)	청사로228 청사 오피스텔 404호	80㎡ (‘02.11.30)	6	청각장애인 수화통역	(사)한국농아인협회 대전협회서구지부
유성구수화통역센터 (822-6642)	유성구 문화원로 6번길19(장대동 대남빌라 1층)	118.73㎡ (09.12.31)	6	청각장애인 수화통역	(사)한국농아인협회 대전협회유성구지 부
대덕구수어통역센터 (345-0032)	대덕비래동로 7번길54(비래동)	123.84㎡ (‘09. 1.22)	6	청각장애인 수화통역	(사)한국농아인협회 대전협회대덕구지부
점자도서관	1개소		4		
대전점자도서관 (252-0055)	중구 서문로 10 한밭도서관	515㎡ (‘10. 7. 21)	4	점자도서 열람, 시청각 녹음도서	(사)대전점자도서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 설 명	소재지	장애 유형	시설 규모	근로 자수		직 원		주요내용	비 고
				정	현	정	현		
계				93 5	68 9	21 1	15 5		
판암보호작업장 (285-0030)	동구 동부로 56-34(판암동)	지적	834	40	32	11	8	제빵, 단순임가공	'10.12.24
중부재활작업장 (285-0084)	동구 산내로 1396-37(대성동)	척수 장애	150.7	30	30	9	6	대나무젓가락 하청, 인쇄업	'11.05.23
거북이보호작업장 (070-8291-8070)	보문로4, 2층 201호(효동)	지적 장애	188.75	20	23	4	4	임가공, DM발송, 포장 등	'13.07.01
밀알드림센터 (586-0813)	중구 대둔산로 200번길38(안 영동)	지적 장애	979.87	50	44	14	9	휴대용 가스 렌즈부품조립, 인쇄업 등	'04. 8. 5 근로사업장 변경('13. 7. 31)
호두나무보호작업장 (070-7806-4557)	중구 유천로 27-21	지체, 지적	157.2	20	3	4	1	임가공(티백 포장), 천연비누	'18.5.21
월평보호작업장 (472-1762)	서구 월평북로 11 (월평동)	지체	102.6	18	18	5	4	부직포가방, 전단지, 과자포장	'08. 2.28
한터보호작업장 (586-3341)	서구 삼보실길 123(장안동)	지적 장애	399.6	66	66	9	9	제빵, 참기름, 들기름, 단순임가공	'00. 9.30
도토리보호작업장 (535-4240)	서구 복수남로 30(복수동)	지적 장애	229.3	20	20	7	6	견과류소분, 농부자제임가공	'00. 9.30 '09.10.12이전
보람의 집 (532-4145)	서구 동서대로 998번길13-5	지체, 지적	446	30	24	7	5	임가공(박스 접기),장바구 니,비즈공예	'00.12. 1
연광실업보호작업장 (582-2254)	서구 영골길 159(오동)	지적	503.25	60	43	11	8	봉제	'10.10.29
비컴장애인직업적 응훈련센터 537-8477	서구 배재로98 (도마동)	지적	93.6	20	20	4	3	직업적응훈련	16.11.1.

나라 (534-3344)	서구 갈마로107 (갈마동)	지적	205.8	40	20	8	3	제과제빵	17.5.1.
어울림보호작업장 (486-3894)	서구만년로68 번길 15-26(만년동)	지체, 지적	195.11	30	10	1	1	기어봉 커버씰우기 의자조립	'18.11.15
성세시온의집 (540-3260)	유성대로 298번길 175	지체, 지적	331.2	30	24	10	6	종이가방, 전자제품임가 공 등	'00.12.26
성세재활자립원 (540-3300)	유성대로 298번길 175	지체, 지적	2,131. 07	50	30	12	11	임가공조립, 현수막, 인쇄 업등	'86.10.29
희망자리 (824-9901)	유성구 유성대로 694번길 95, 2층(봉명동)	지체, 지적	201.64	30	15	6	4	현수막, 인쇄업 등	'16. 2. 5
사나라 (822-4612)	유성구 지족동로 142번길 45, 6층(지족동)	지체, 지적	156.88	30	14	6	4	임가공업, 비누제작 등	'16. 6.16
굿프랜드보호작업장 (541-3233)	유성구 진잠로 106번길 2-26	지체, 지적	172.8	30	16	4	2	임가공, 공예 등	'18. 2. 8
천성보호작업장 (349-8940)	대덕구 대화1길 6 (대화동)	지적 장애	2,623. 26	95	73	14	9	단순포장, 화장품임가공	'00. 12. 21
대전보호작업장 (637-8043)	대덕구 한남로 123 (오정동)	지적 장애	429	35	30	7	6	천연비누, 비닐하우스용 집기조립	'90. 3. 01 변경:'16. 10. 1. 법인변경, 설치 재신고
느루보호작업장 (637-2257)	대덕구 오정로 112 (오정동)	지적, 자폐	157	18	15	4	4	홍삼쿠키	'08. 10. 1.
해비라기보호작업장 (638-9004)	대덕구 우암로 416 (비래동)	지적, 자폐	198.57	18	15	5	3	애완견목걸이 조립	'16. 9. 19.
늘품대덕직업 적응훈련센터 (361-1520)	덕암북로48번 길 26-12 (덕암동)	지적, 자폐	129.6	20	8	3	2	단순포장	'17. 12. 20.
무지개복지공장 (930-2300)	대덕구대덕대 로 1417번길 80	지적 장애	4,057. 43	80	73	28	28	핸드 타월, 점보롤, 복사지, 제과제빵	'11.8.10
굿월스토어 밀알대전점(345-2 003)	대덕구동서대로 1777번길 1	지적, 자폐	1,927	60	23	18	9	의류, 가전, 등 재활용품 판매	'18.9.11

□ 연도별 신고현황

구분	계	'90년 이전	'91~ '00	'01~ '05	'06~ '10	'11~ '14	'15	'16	'17	'18
계	23									
동구	4				2	2				
중구	1			1						
서구	8		3		1	1		1	1	1
유성	3		1				2			
대덕	7	1	1		1	1		1	1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시 설 명	소재지	대표 자	시설 규모	직원		주요내용	비 고
				정원	현원		
대전장애인생산 품판매시설 (826-3233)	유성구 은구비남로 7번길15(지족동)	김선 경	334	8	8	장애인생산품 판매	'87. 5.10

※ 보조금 : 인력 4명 지원 / 나머지는 자부담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시 설 명	소재지	시설규모	종사자	주요내용	비 고
의료시설	2개소		220		
성세병원 (543-2111)	유성구 온천북로 33번길 21-32(봉명동)	부지658.8㎡ 건물3,299㎡	14	장애인 진단, 치료 등	(사복)성재원
대전재활전문 병원 (717-7610)	유성구 문화원로 146번길 7-24(봉명동)	부지 944.4㎡ 건물 5,976.51㎡	206	장애인 진단, 치료 등	(사복)성화원

□ 성폭력 보호시설

시 설 명	소재지	시설 규모	직원		이용자		주요내용	시설 신고일
			정원	현원	정원	현원		
늘 해 랑 (070-4739-3671)	대덕구 대화1길 2	297㎡	7	7	12	9	성폭력피해장애 인보호 및 자립·재활 서비스 제공	'14.6.2 개원. 6.27

□ 장애인 재활치료시설(11개소)

시 설 명	소재지	시설 규모 (㎡)	종사자	주요내용	시설신고일 (전화번호)
재활치료시설	11개소		78		
ILU 언어심리 발달센터	동구 동서대로 152번길 157(성남동)	1,385.8	9	미술, 작업, 인지, 언어	'15.10.17(개인) (625-4472)
루루장애 재활치료센터	동구 계족로 499. 루루빌딩(용전동)	1,194.26	19	작업, 인지, 언어, 음악	'15.2.16(개인) (631-1086)
한스발달 지원센터	동구 동대전로 81 (대동,502호)	78.0	6	작업치료, 언어	'14.05.01(개인) (274-5510)
우리동네아동 발달센터	중구 평촌로 58, 402호 (유천동, 동양빌딩)	127.92	4	언어, 미술, 놀이	'15.5.18(개인) (070-4119-0811)
크로바아동 청소년발달센터	중구 계룡로 769, 2층 (용두동)	249.9	4	언어, 음악, 미술	'16.4.21(개인) (232-2911)
박영진아동 청소년발달센터	서구 신갈마로 75-6 (갈마동)	145.5	3	언어	'14.6.26(개인) (382-9887)
정립아동발달 지원센터	서구 계백로 1286번길 86, 4층(정립동)	60.0	4	언어	'15.1.27(법인) (070-7601-3177)
유성구장애인 종합복지관	유성구 북유성대로 166(죽동)	357.81	3	언어, 미술, 감각	'13.02.01(법인) (820-3635)
다니엘 발달 지원센터	유성구 학하복용서로 19, 1층(학하동)	118.85	9	언어, 미술, 음악, 행동	'16.12.28(법인) (822-3695)
창조아동발달 센터	유성구 계룡로132번길 10, 404호	137.0	8	언어, 미술, 음악, 행동	'18.05.15.(개인) (484-0508)
대전아동가족 클리닉	대덕구 동춘당로 94번길 11-7,701호(송촌동,광혜빌딩)	117.15	9	언어, 미술, 놀이	'16.04.19(개인) (631-6007)

